

안전보건교육규정 주요 개정내용

조항	개정안	시행일자
제3조의2제 제3항 마목 우편통신교육 인정시간 축소(원격)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u>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u> , 특별교육은 총 교 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2024. 1. 1.
제5조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 콘텐츠 형태(원격)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u>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u> 2.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2024. 1. 1.
제5조제3호 모바일 원격교육 허용(원격)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 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2023. 3. 2.



제6조 비대면 실시간교육 허용(집체)	제6조(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3. 3. 2.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다. 교육관리)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제어 (원격)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023. 3. 2.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라. 교육평가관리) 인터넷 원격교육 평가(원격)	 <인터넷 원격교육>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11) (9)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11)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첨삭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첨삭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 1. 1.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라. 교육평가관리) 우편통신교육 수강 횟수 제한(원격)	<무편통신교육> (1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 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의 실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 (15)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14)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1. 1.